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질사고 피해보상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0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질사고 피해보상 근거 마련	2
IV. 참고자료	5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中 요금 감면조항	5
2. 지자체 수도요금 현황	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8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질사고 피해보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2(수질사고 피해보상) ①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보상절차, 그 방법,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1)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로, 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제38조²⁾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³⁾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2020년 경북 구미 수돗물 유충 사건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법률에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수돗물 사고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⁴⁾ 피해보상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 사고의 기준·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⁵⁾.

2)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현행법에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제4조제2항제19호), 개선명령(제64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돗물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둘째,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참고자료2)⁶⁾을 감안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손실보상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운영비가 증가할 우려⁷⁾가 있으므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

5)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탁수, 유출 등의 사고는 수도물 공급은 원활하나 음용자제 권고로 사고가 아닌 수질민원에 해당하고, 수도물 사고는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한 수질악화, 시설파괴 등으로 식용수 공급 중단이 발생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의미하며, 수도물 사고 발생시 「재난안전법」 및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6)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적으로 72.8%, 시지역 76.5%, 군 지역 41.4%로 나타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7.7% 수준임.

7) 수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춘천시 등은 개별 법에서 별도의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상수도과), 053-810-5608

제39조(요금 및 수수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은행자동납부 수용가
 4.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감면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경산시(상수도과), 053-810-5608

제27조(요금 및 관련 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요금 및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삭 제>
4. 은행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1퍼센트 상당액
5.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 요율의 요금을 적용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 요율의 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 2

지자체 수도요금 현황

구 분	평균단가(원/m ³)	생산원가(원/m ³)	요금 현실화율(%)
전국(평균)	747.8	1,027.5	72.8
특·광역시(평균)	672.9	817.8	82.3
서울특별시	632.9	747.9	84.6
부산광역시	878.8	955.8	91.9
대구광역시	667.9	836.0	79.9
인천광역시	639.9	879.0	72.8
광주광역시	646.4	830.4	77.8
대전광역시	530.6	647.0	82.0
울산광역시	836.6	1,119.9	74.7
세종특별자치시	876.4	1,951.5	44.9
전국 시(평균)	776.9	1,015.7	76.5
전국 군(평균)	966.2	2,331.2	41.4
경기도	687.2	858.9	80.0
경기도 시	678.4	837.3	81.0
경기도 군	1,215.0	2,147.3	56.6
강원도	1,031.7	2,165.9	47.6
강원도 시	953.5	1,388.9	68.7
강원도 군	1,225.6	4,091.5	30.0
충청북도	832.4	1,076.5	77.3
충청북도 시	797.7	875.4	91.1
충청북도 군	929.3	1,637.8	56.7
충청남도	955.4	1,436.0	66.5
충청남도 시	944.7	1,274.8	74.1
충청남도 군	1,008.2	2,229.7	45.2
전라북도	937.3	1,323.5	70.8
전라북도 시	929.9	1,133.2	82.1
전라북도 군	970.5	2,170.3	44.7
전라남도	879.6	1,474.6	58.7
전라남도 시	847.4	1,241.4	70.9
전라남도 군	847.4	1,806.5	46.9
경상북도	858.4	1,558.7	55.1
경상북도 시	873.7	1,348.5	64.8
경상북도 군	787.0	2,541.5	31.0
경상남도	878.5	1,357.1	64.7
경상남도 시	867.5	1,234.0	70.3
경상남도 군	956.2	2,230.4	42.9
제주특별자치도	905.0	1,147.7	78.9